

2000년도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견

의안번호	제481호
의결년월일	2001. 4. 24 (제86회)

제의년월일 : 2001. 4. 24

제 의 자 : 부천시의회의장

1. 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

2. 내 용

○ 2000년도 부천시결산검사위원

구 분	소 속	직 위	성 명	비 고
대표위원	부천시의회	시의원	강진석	○ 기획재정위원회 위원

위 원	김선구 회계사사무소	공인회계사	김 선 구	○ 정부회계제도 개선협의회 위원 ○ 동국대 경제학과 졸업
위 원	정길영 회계사사무소	공인회계사	정 길 영	○ 95~99. 부천시결산검사위원 ○ 서강대 경영학과 졸업
위 원	박해울 회계사사무소	공인회계사	박 해 울	○ 97~99. 부천시결산검사위원 ○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
위 원	시장 추천자		임 성 윤	○ 전공무원(소사구 총무과장)

3. 참고사항

관 련 법 규

○ 지방자치법

제124조(결산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1999. 8. 31> (이하생략)

○ 지방자치법시행령

제48조(결산승인)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. <본조신설 1999. 12. 31>

제46조의2(감사위원의 선임) ①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수는 시·도의 경우에는 5인 이상 10인 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그 정수·선임방법·운영 및 실효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1994. 7. 6>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 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감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1994. 7. 6, 1999. 12. 31>

③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○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

제2조(위원의 정수)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.

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. 다만, 위원 중 1 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.

②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 을 받아야 한다.

③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,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다. (이하생략)

제6조(대표위원) ①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, 지방의회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. (이하생략)